

의안 번호	2201	[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]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12. 1.(금) 문기호 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12. 1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12. 18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(문기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울산광역시 중구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지역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나. 주요내용
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(안 제5조)
- 위원회 설치(안 제6조)
- 위탁(안 제7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관광기본법」 제6조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관광기본법

제6조(지방자치단체의 협조)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